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86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 김준혁 • 이수진 • 김동아

박지원 · 김영호 · 박희승

김병주 · 염태영 · 강유정

윤종오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청 간에 과태료 징수를 촉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세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달리 과태료는 관할 행정청이 아니면 징수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부과 처분 주체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경우 과태료 징수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행정청 간의 징수촉탁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차량 관련 과태료(주정차위반·책임보험미가입·검사지연 과태료 등)의 경우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징수촉탁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태료를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징수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고, 촉탁받은 지방자 치단체는 촉탁 사무비용과 송금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하며, 부과 행 정청 상호 간 과태료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 로써, 과태료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징수를 통한 행 정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5조의2(징수촉탁)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 또는 재 산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과태료 징수금 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행정청에 송금 하여야 한다.
 - 1. 징수한 과태료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 2. 체납처분비
 - ③ 행정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과태료 징수금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제55조의2(징수촉탁) ①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 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 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를 촉 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 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과태료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 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행정청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징수한 과태료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 여 산정한 금액
	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